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4. 15 선고 2020가단20783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

담당변호사 이중섭

피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

담당변호사 이정의

변론 종결2021. 3. 4.

판결 선고2021. 4. 15.

주 문

1.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3. 25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9. 3. 25. 접수 제71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

(1) 원고는 B의 보증의뢰에 따라 B이 C 및 D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보증내역 표1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C 및 D에 발급하였고, B은 아래 대출내역 표2 기재와 같이 C 및 D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.

<표1. 보증내역>

1	E	85,000,000	2013. 2. 13.	2020. 2. 7.	일반자금 자금대출(운전)	C 청학동지점
2	F	90,000,000	2015. 2. 12.	2020. 2. 7.	(기운)일반자금 대출(일시상환)	D 부산역지점

<표2. 대출내역>

1	E	85,000,000	C 청학동지점	2013. 2. 13.	100,000,000
2	F	90,000,000	D 부산역지점	2015. 2. 17.	100,000,000

(2)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, 미수위약금,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

(3) B은 2019. 4. 30. 사업장 권리침해 등의 부실처리를 한 데 이어 2019. 12. 11. 및 같은 달 27. 보증부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, 이에 따라 원고는 C 및 D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C 및 D에 B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.

<표3. 대위변제내역>

1	E	2020. 3. 30.	76,500,000	1,228,518	77,728,518
2	F	2020. 3. 23.	76,500,000	1,227,203	77,727,203
합계	153,000,000	2,455,721	155,455,721		

나.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

B은 2019. 3. 25.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,000,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같은 날 B은 피고에게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제1 내지 8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채권자취소권 성부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(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).

(2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2020. 3. 23. 및 2020. 3. 30. 각 발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하였으나,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, 2019. 4. 30. B이 사업장 권리침해의 부실처리를 한데 이어, 2019. 12.에도 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이후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가 구상금채권을

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,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B의 무자력

(1)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8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영도구청, C, G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바,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.

적극재산

1	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아파트 J동-K호 (목록1)	315,000,000	다툼 없음
2	부산 영도구 L (목록2) 위 L 건물 (목록3,4)	1,708,000,000 236,000,000	
3	합계금	2,259,000,000	

소극재산

1	원고	대위변제금	77,727,203	다툼 없음
2		77,728,518	다툼 없음	
3	C	대출금합계	1,900,168,589	다툼 없음
4	M	18.12.24. 대출	1,450,000	G기관 회신
5	N	17.01.31. 대출	1,162,000	다툼 없음
6	17.05.15. 대출	12,529,000		
7	17.05.16. 대출	8,736,000		
8	O	18.12.24. 대출	8,200,000	
9	P	19.01.23. 대출	3,500,000	
10	Q	19.01.23. 대출	1,273,000	
11	R	18.06.11. 대출	12,500,000	
12	S	19.02.25. 대출	4,700,000	
13	M	18.01.23. 대출	2,000,000	
14	피고	대여금 합계	559,400,000	다툼 없음
15	중소기업은행	20.02.18. 가압류청구	19,594,263	갑8-1
16	T	19.04.03. 가압류청구	100,000,000	갑8-2

1	원고	대위변제금	77,727,203	다툼 없음
17	U	19.04.08. 가압류청구	98,000,000	
18	V	19.04.15. 가압류청구	350,000,000	
19	W	20.02.05. 가압류청구	63,000,000	
20	한국전력공사	20.02.26. 가압류청구	6,062,590	
합계금	3,307,731,163			

(2) 피고는 2020. 11. 17.자 영도구청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B이 2019. 3.경 기준으로 X 및 Y 각 비영업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자동차 역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위 자동차가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자동차는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.

(3) 피고는 또한, 수익자인 자신의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, 채무자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소극재산에서 수익자에 대한 채무 역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.

(4) 다음으로 피고는 소극재산 순번 15 내지 20의 가압류 채권은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루어졌고, 채권금액 역시 모두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, 위 각 가압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시점과 인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각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, 가사 그렇지 않아 각 가압류 금액 상당을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B의 채무가 2,671,074,310원에 이르므로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.

다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(1)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(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),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).

(2)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,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으므로, B이 수인의 채권자 중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.

라.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 2011. 4.경부터 2018. 8.경까지 B에게 5억 원 상당의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, 2019. 3.경 추가로 3,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전 차용금에 대한 담보설정을 요구하였고,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며, 당시 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라고 주장한다.

그러나,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되는 것인바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),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B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한 것 뿐이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마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정정호

별지